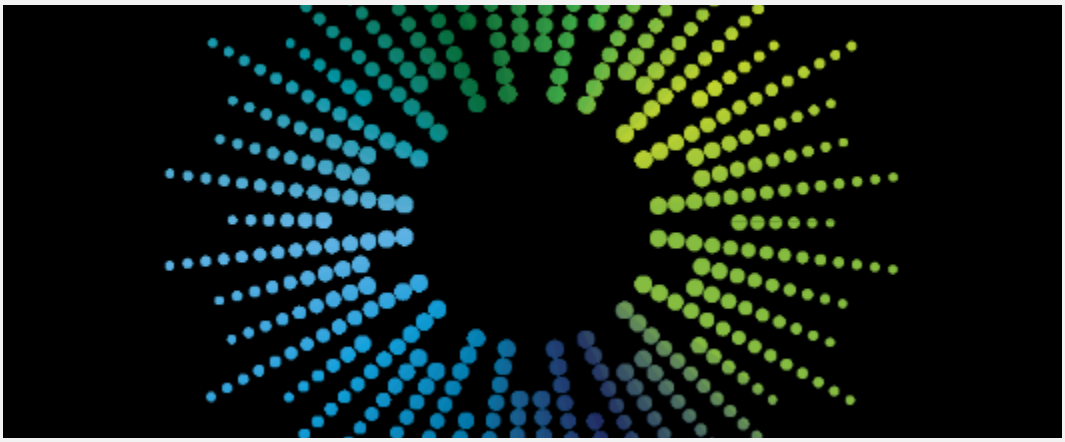

Creating the future, together
Korean Tax Newsletter

2021 년 1 월

• 예규·판례

가. 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금을 차입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이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지급할 의무가 임직원에게 있는 손해배상금을 법인이 대신 지급하고 구상채권을 계상하는 경우 동 구상채권은 해당 임직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는 것임 (서면-2020-법인-4856, 2020.12.15.)

▣ 평석

- 동 예규는 법인이 마치 사용인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배상금 재원을 차입하여 대신 변제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하지만 민사상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 3 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민법 제 756 조).

- 따라서 법인의 사용인이 제 3 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인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존재합니다. 다만, 법인은 제 3 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인정이자 계상, 대손사유에 해당하더라도 대손처리 불가능,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법인세법상 불리한 점이 많기 때문에, 동 예규는 납세자에게 크게 영향을 줍니다.
- 그렇지만 법인이 제 3 자에게 사용자책임을 진 후, 사용인에게 구상채권을 갖는 것은 민사 법리상 당연한 것이고, 구상채권이 발생한 연유는 본래 법인의 제 3 자에 대한 민사상 책임이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구상채권은 법적 의무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이는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상채권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의제할 수 있는 법인세법상 근거는 미약해 보입니다.

나. 정보통신사가 고객의 통신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고객의 월정 통신료에서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할인)하는 멤버십포인트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멤버십포인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 것임 (사전-2020-법령해석부가-0972, 2021.01.06.)

<예규 전문>

▣ 질의

(사실관계)

-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부가가치세법」제 29 조제 3 항제 6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1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멤버십포인트의 구체적 지급기준 및 내역은 다음과 같음.

고객 등급 구분	멤버십포인트 (할인한도)	제공 혜택
○○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0 만원 이상	15 만 포인트	내부 · 외부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할인 · 감면 혜택, 각종 이벤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100 만원 이상	12 만 포인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60 만원 이상	10 만 포인트	
##등급: 연간 이용금액 40 만원 이상	7 만 포인트	
□□ 등급: 연간 이용금액 20 만원 이상	5 만 포인트	

- 신청법인은 ○ ○ 등급 및 △△등급 요금제에 가입한 고객이 단말보험서비스(*1) 또는 단말기 가격 보장서비스(*2)에 가입하는 경우 월정액 통신료 중 일정액을 멤버십포인트로 차감(이하 “멤버십포인트 할인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임.

  (*1) 핸드폰 도난, 화재, 파손, 침수 분실 등으로 인한 고객의 손해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2) 고객이 사용 중인 단말기를 반납하고 새로운 단말기로 기기변경 시 출고가의 최대 50%를 보상해주는 서비스

- 고객은 멤버십포인트 차감 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멤버십포인트를 매월 월정액 통신료 지급에 사용할 수 있으며

  - 멤버십포인트 할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월정액 멤버십차감’에 동의표시를 하고 통신서비스 가입약정을 체결함.

  (질의요지)

- 통신사가 고객과의 사전약정에 따라 고객의 멤버십포인트를 차감하고 멤버십포인트 차감액 만큼을 통신료에서 할인하는 경우 해당 할인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신

- 정보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고객 중 멤버십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에게 이용실적에 따라 멤버십포인트를 부여하고 포인트 범위 내에서 할인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멤버십포인트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로서사업자가 고객과의 사전 약정에 따라 고객에게 이동통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이하 “통신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멤버십포인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통신료를 할인하는 경우 해당 통신료 할인액은「부가가치세법」제 29 조제 3 항제 6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61 조에 따라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급 당시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충족하고 공부상 용도 역시 업무시설이므로,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나 사실상 주거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고 실제로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조세특례제한법 제 106 조 제 1 항 제 4 호에서 말하는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대법원 2021.1.14. 선고 2020 두 40914 판결)

▣ 사실관계

-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자로서 공부상 업무시설인 오피스텔 분양시 해당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가 주거용이고, 1 호 또는 1 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이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 면세로 신고하였음
- 처분청에서는 위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였음

▣ 쟁점

-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85 제곱미터 이하의 오피스텔이 부가가치세법상 면제대상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에 해당될 수 있는지 여부

▣ 판결이유(납세자 패)

-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그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4 항 제 1 호는 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을 '제 51 조의 2 제 3 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 51 조의 2 제 3 항은 위 규모를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라고 정하고 있음.
- 그리고 구 주택법(2016. 1. 19. 법률 제 13805 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6. 8. 12.부터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 조 제 3 호는 '국민주택 규모'를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 호 또는 1 세대당 85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 2 조 제 1 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 호 또는 1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 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정하고 있음.
- 또한 구 주택법 제 2 조는 제 1 호에서 '주택'을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로 정의하면서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이와 별도로 제 1 의 2 호에서 '준주택'을 '주택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으로 정의하면서 그 범위와 종류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주택법 시행령(2016. 8. 11. 대통령령 제 27444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 조의 2 제 4 호는 '준주택'의 하나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 호 (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을 들고 있음.
- 그리고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 14 호 (나)목은 '오피스텔'을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구분되는 '업무시설'의 하나로 정하면서 '업무를 주로 하며,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구획 중 일부 구획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 **이 사건 면세조항의 위임에 따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6 조 제 4 항 제 1 호는 위와 같이 '주택'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음.
- 위 법령의 문언 · 내용과 체계, 이 사건 면세조항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취지, 주택과 오피스텔에 대한 각종 법적 규율의 차이, 특히 조세특례제한법령의 다른 규정에서 이 사건 면세조항과 달리 '오피스텔' 또는 '주거에 사용하는 오피스텔'이 '주택'에 포함된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그 규모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면세조항의 '국민주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공급하는 건축물이 관련 법령에 따른 오피스텔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하여 공부상 업무시설로 등재되었다면, 그것이 공급 당시 사실상 주거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건축법상 오피스텔의 용도인 업무시설로 사용할 수 있음

- 위와 같은 경우 이 사건 면세조항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는 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는 원칙적으로 공급 당시의 공부상 용도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아가 해당 건축물이 공급 당시 공부상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에 해당하여 이 사건 면세조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된 이상 나중에 실제로 주거 용도로 사용되고 있더라도 이와 달리 볼 수 없음

Back to top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kr/about to learn more.

Deloitte is a leading global provider of audit and assurance, consulting, financial advisory, risk advisory, tax and related services. Our network of member firms in more than 150 countries and territories serves four out of five Fortune Global 500® companies. Learn how Deloitte's approximately 286,000 people make an impact that matters at www.deloitte.com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its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network")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entity in the Deloitte network shall be responsible for any loss whatsoever sustained by any person who relies on this communication.

© 2021.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

To no longer receive emails about this topic please send a return email to the sender with the word "Unsubscribe" in the subject line.